

# (사)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정관

2006. 09. 01. 문화부장관 인가

2014. 11. 10. 1차 개정

2015. 01. 05. 2차 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 회의 명칭은 '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'(이하 '본회'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소재지)**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**제3조(목적)**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① 건전한 박물관·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
- ② 서울특별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
- ③ 연구발표회,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
- ④ 서울특별시내의 박물관·미술관 특별전 지원 사업
- ⑤ 박물관·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
- ⑥ 세계 각 도시의 박물관들과의 교류
- ⑦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## 제5조(수익사업)

-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6조(이익의 제공)

-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.

## 제2장 회원

**제7조(회원의 자격)**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, 추후 총회에 보고 한다.

- ① 정회원 :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을 대표하는 자
- ② 명예회원
- ③ 특별회원
- ④ 준회원

**제8조(회원의 권리)**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명예·특별·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.

**제9조(정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
-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④ 입회비,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**제10조(회원의 탈퇴)**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.

**제11조(회원의 상벌)**
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자격정지·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**제3장 임원**

**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 1인
- ② 부회장 2인
- ③ 상임이사 1인
- ④ 이사 15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- ⑤ 감사 2인 이내
- ⑥ 고문 약간 명

**제13조(임원의 선임)**

-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 후 이사회에 보고 한다. 그 취임에 관하여서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에 선출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해임과 사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.

**제15조(임원의 선임 제한)**
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**제16조(임원의 임기)**
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의 임기는 1회 연임할 수 있다.
-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7조(임원의 직무)**
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, 처리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-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- 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- 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**제18조(회장의 직무대행)**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장 총회**

**제19조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20조(구분 및 소집)**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**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- 2.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- 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2조(의결 정족수)**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**제23조(총회의 의결)**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⑤ 사업계획의 승인
- ⑥ 기타 중요사항

**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**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5장 이사회**

**제25조(이사회 구성)**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26조(구분 및 소집)**

-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상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**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- 2. 제17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/3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8조(서면결의)**

-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제29조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### 제30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④ 재산관리(자산취득처분)에 관한 사항
-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사항
- ⑥ 임원의 임명사항
-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추대
-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 제31조(이사회 의결제척)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24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와 같다.

## 제6장 재산과 회계

### 제32조(재산의 구분)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-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### 제33조(기본재산의 처분)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34조(수입금)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.

- ① 입회비 및 회비
- ② 지원금
- ③ 보조금 및 출연금
- ④ 기타 수입금

### 제35조(차입금)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36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 제37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### 제38조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39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제40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7장 사무부서

### 제41조(사무국)

-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 제8장 명예회원·특별회원·준회원

**제42조(명예회원)**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협회 발전에 유공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명예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**제43조(특별회원)**

- ①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② 특별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

**제44조(준회원)**

- 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박물관으로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·미술관을 대표하는 자

**제9장 보칙**

**제45조(법인해산)**

-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.
-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**제46조(정관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**제47조(업무보고)**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.

**제48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** 이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 1과 같다.

**제4조(창립회원)**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 1과 같다.

**제5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**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는 별지 2와 같으며 전원 기명날인 한다.

**규칙**

**제1호 <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>**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에 규정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사무국은 총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, 문서관리, 재산 및 회계관리, 회원의 신상관리,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3조(보수)**

- ①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**제2호 <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>**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정관 제9조의 회비 및 회원가입 시 납부할 입회금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비) 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만원, 연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.(2016.1.15-정기총회 의결)

제3조(금액의 조정) 제2조 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3호 <협회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>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협회의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구) 이 협회에 학술연구분과위원회, 운영분과위원회, 해외분과위원회, 출판분과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며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상임이사가 이를 통괄한다.

제3조(학술연구분과위원회) 학술연구분과위원회는 박물관에 관한 학회활동 및 학술연구와 조사를 행한다.

제4조(운영분과위원회) 운영분과위원회는 이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진행한다.

제5조(해외분과위원회) 해외분과위원회는 우리나라 박물관의 해외소개, 외국박물관과의 교류 등 ICOM 및 외국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6조(출판분과위원회) 출판 분과위원회는 본 협회의 모든 자료를 출판한다.

제7조(기구표) 본 협회의 기구표는 별표 3과 같다.

